



# 시 보



제1569호 2022. 11. 7.(월)

## 입법예고

-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----- 2
-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----- 8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공보과 ☎ 061-270-8539

목포시 공고 제 2022 - 1787호

## 입 법 예 고

「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1월 7일

## 목 포 시 장

1. 조 례 명 : 「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

### 2. 개정이유

- 우리시는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도시로 육상은 단거리, 중장거리, 마라톤, 투척 등 메달이 가장 많은 종목으로 마라톤 및 단거리 종목 전문선수의 충원이 필요함
- 전국대회 상위 입상, 미래 성장 전망 등을 고려하여 [별표1]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단원의 정원을 변경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단원의 정원 조정(안 제2조 별표1)
    - 육상팀 선수 정원을 5명에서 6명으로 조정
- ※ 별지 참조

4. 관계법령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
-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(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)

5. 관련부서 의견 : 없음

- 부패영향평가 :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없음
- 규제심사(심의) 대상 여부 : 없음

6. 개정 조례(안) : 별첨

7. 입법예고 기간 : 2022. 11. 7. ~ 2022. 11. 28.(21일간)

8. 의견제출

-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교육체육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시 기재내용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

나.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

- [우58613] 전남 목포시 양을로203(용당동), 목포시청 3층 교육체육과
- ☎ 061)270-8639 / Fax 061-270-3646 / 이메일 hjy1126@korea.kr

## 8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규칙 제 호

##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

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표 1】

##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단원의 정원 (제2조 관련)

종 목	계	축구	하키	육상	비고
총 계	63	34	21	8	
감 독	3	1	1	1	
코 치	6	3	2	1	
선 수	54	30	18	6	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<b>【별표】</b>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단원의 정원(제2조 관련)						<b>【별표】</b>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단원의 정원(제2조 관련)					
<b>종 목</b>	<b>계</b>	축구	하키	<b>육상</b>	비고	<b>종 목</b>	<b>계</b>	축구	하키	<b>육상</b>	비고
<b>총 계</b>	<b>62</b>	34	21	<b>7</b>		<b>총 계</b>	<b>63</b>	34	21	<b>8</b>	
감 독	3	1	1	1		감 독	3	1	1	1	
코 치	6	3	2	1		코 치	6	3	2	1	
<b>선 수</b>	<b>53</b>	30	18	<b>5</b>		<b>선 수</b>	<b>54</b>	30	18	<b>6</b>	

###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조 례 명 :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목포시 공고 제2022-1800호

##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11. 7.

### 목 포 시 장

#### 1. 개정이유

- 시 역점시책의 추진 동력 확보 등 일과 기능 중심의 민선8기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
-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행정안전부 국가사업(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) 기준인건비 인력 반영

#### 2. 주요내용

- 공무원 정원 조정(안 제2조)
  - 가. 공무원의 총수 : 1,367명 ⇒ 1,374명(증 7명)
  - 나. 집행기관의 정원 : 1,338명 ⇒ 1,339명(증 1명)
    -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인력 1명 증원(사회복지직)
  - 다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9명 ⇒ 35명(증 6명)
    -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6명 증원(지방자치법 제41조)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(안 별표 3)

가. 5급 정원 : 69명 ⇒ 71명(증 2명, 민선8기 기구개편(안) 반영)

나. 6급 이하 정원 : 1,267명 ⇒ 1,272명(증 5명)

- 안 제2조에 따른 6급 이하 정원 증원(⊕7명) 및 민선8기 기구개편(안)에 따른 6급 이하 정원 조정(△2명)

다. 정원 조정내역(별표 3)

(단위 : 명)

구 분	현 행						조 정						
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동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동	
총 계	1,367	1,367					1,374 (⊕ 7)	1,374 (⊕ 7)					
정무직	1	1					1	1					
일반직	소계	1,346	1,346					1,353 (⊕ 7)	1,353 (⊕ 7)				
	3급	1	1				1	1					
	4급	9	5	1	1	2	9	5	1	1	2		
	5급	69	26	3	3	14	71 (⊕ 2)	31 (⊕ 5)	3	3	11 (△ 3)	23	
	6급 이하	1,267	1,267					1,272 (⊕ 5)	1,272 (⊕ 5)				
연구직	연구사	17	17					17	17				
지도직	지도사	3	3					3	3				

3. 개정 조례안 : 별첨

4. 신.구조문 대조표 : 별첨

5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

## 6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 : 해당없음
- 규제심사 대상여부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## 7. 예산사항

구 분	증감인원	소요비용 내역 (원)			비고
		인원	1인당 보수액	총 금액	
소 계	⊕7명	7명		509,258,405	
5급	⊕2명	2명	105,632,645	211,265,290	
6급 이하	⊕5명	5명	59,598,623	297,993,115	7급 1호봉 기준

## 8. 입법예고 기간 : 2022. 11. 7. ~ 11. 14.(7일간)

## 9. 사전협의(승인)사항 : 해당없음

## 10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4일까지 목포시장(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처 : 58613,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(용당동) 목포시청 자치행정과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579), 직접방문 등

## 11. 기타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(☎ 061-270-3439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조례 제 호

###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“1,367명”을 “1,374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338명”을 “1,339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29명”을 “35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 3〕

###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동
총 계	1,374	1,374				
정무직계	1	1				
정무직	1	1				
일반직계	1,353	1,353				
3급	1	1				
4급	9	5	1	1	2	
5급	71	31	3	3	11	23
6급이하	1,272	1,272				
연구직계	17	17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17	17				
지도직계	3	3				
지도관						
지도사	3	3		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공무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1,367명</u>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338명</p> <p>2. 의회사무국의 정원 : 29명</p> <p>[별표 3] 정원관리 기관별.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 계</th> <th>본 청</th> <th>의회</th> <th>직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u>1,367</u></td> <td colspan="5"><u>1,367</u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>시 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u>1,346</u></td> <td colspan="5"><u>1,346</u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9</td> <td>5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2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<u>69</u></td> <td><u>26</u></td> <td>3</td> <td>3</td> <td><u>14</u></td> <td>23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</td> <td><u>1,267</u></td> <td colspan="5"><u>1,267</u>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계</td> <td>17</td> <td colspan="5">17</td> </tr> <tr> <td>연구관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</td> <td>17</td> <td colspan="5">17</td> </tr> <tr> <td>지도직 계</td> <td>3</td> <td colspan="5">3</td> </tr> <tr> <td>지도관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>지도사</td> <td>3</td> <td colspan="5">3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소	동	총 계	<u>1,367</u>	<u>1,367</u>					정무직 계	1						시 장	1	1					일반직 계	<u>1,346</u>	<u>1,346</u>					3급	1	1					4급	9	5	1	1	2		5급	<u>69</u>	<u>26</u>	3	3	<u>14</u>	23	6급 이하	<u>1,267</u>	<u>1,267</u>					연구직 계	17	17					연구관							연구사	17	17					지도직 계	3	3					지도관							지도사	3	3					<p>제2조(공무원의총수)----- -----<u>1,374명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: 1,339명</p> <p>2. ----- : 35명</p> <p>[별표 3] 정원관리 기관별.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 계</th> <th>본 청</th> <th>의회</th> <th>직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u>1,374</u></td> <td colspan="5"><u>1,374</u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>시 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u>1,353</u></td> <td colspan="5"><u>1,353</u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9</td> <td>5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2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<u>71</u></td> <td><u>31</u></td> <td>3</td> <td>3</td> <td><u>11</u></td> <td>23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</td> <td><u>1,272</u></td> <td colspan="5"><u>1,272</u>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계</td> <td>17</td> <td colspan="5">17</td> </tr> <tr> <td>연구관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</td> <td>17</td> <td colspan="5">17</td> </tr> <tr> <td>지도직 계</td> <td>3</td> <td colspan="5">3</td> </tr> <tr> <td>지도관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>지도사</td> <td>3</td> <td colspan="5">3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소	동	총 계	<u>1,374</u>	<u>1,374</u>					정무직 계	1						시 장	1	1					일반직 계	<u>1,353</u>	<u>1,353</u>					3급	1	1					4급	9	5	1	1	2		5급	<u>71</u>	<u>31</u>	3	3	<u>11</u>	23	6급 이하	<u>1,272</u>	<u>1,272</u>					연구직 계	17	17					연구관							연구사	17	17					지도직 계	3	3					지도관							지도사	3	3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1,367</u>	<u>1,367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 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1,346</u>	<u>1,346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9	5	1	1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<u>69</u>	<u>26</u>	3	3	<u>14</u>	2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	<u>1,267</u>	<u>1,267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17	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17	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직 계	3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사	3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1,374</u>	<u>1,374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 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1,353</u>	<u>1,353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9	5	1	1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<u>71</u>	<u>31</u>	3	3	<u>11</u>	2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	<u>1,272</u>	<u>1,272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17	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17	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직 계	3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사	3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【 관계법령 발췌서 】

###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**제24조(정원의 관리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
2. 유사·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④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·도와 관할 시·군·구간 또는 관할 시·군·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**제29조(직급별 정원)**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\_\_\_\_\_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 \_\_\_\_\_

○ 전 화 번 호 : \_\_\_\_\_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